

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인용조문 수정
 -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으로 인용조문 수정
-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
 -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4항에 맞도록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
 -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에 맞도록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
- 조례안 제5조 삭제
 - 지방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은 위원”을 “위원장은 민간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년으로 하되,”를 “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”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기획감사실장 김진영
연 락 처	(033)330-2206

관계 법령

□ 지방재정법

제32조의3 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

① ~ ③ 생략

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0조 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)

① ~ ② 생략

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"는 "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"로 본다.

④ ~ ⑤ 생략